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7.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7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5. 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수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1. 제안이유

- 가.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
이 WTO협정 위배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 나.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
치 · 운영과 시장 · 군수가 설치 ·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
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의 정의 (안 제2조)
-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안 제7조 ~ 안 제8조)
-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내용이 WTO 협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식재료 등을 정의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용어의 표현, 체제가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5조 제2항

○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5조 제2항에서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명칭에 대한 정의가 제7조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 제1항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검토안>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제2항

-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수정 검토안>

⇒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나. 안 제3조 제2항

○ 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는바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 검토안>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안 제7조 제1항

○ 안 제7조 제1항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의 중복이 예상되므로 이를 충청북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정 검토안>

⇒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조례안 일부 조문의 문제점(용어의 표현, 체제의 일관성 미비 등)에 대해 토론 후 이를 수정하기로 함.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 체제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7조에서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와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
- 나.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어,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다. 타시도나 시군의 위원회와 구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생략)</p> <p>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⑤ (생략)</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p> <p>-----</p> <p>-----</p> <p>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p> <p>-----</p> <p>1.~3. (개정안과 같음)</p> <p>② -----</p> <p>----- 충청북도교육</p> <p>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p> <p>-----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p> <p>-----</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p> <p>-----</p> <p>-----</p> <p>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p> <p>-----</p> <p>-----</p> <p>②~⑤ (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 바. 생산자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2.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급식시행계획과 기타 필요사항

-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본부장

2. 충청북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충청북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의 급식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계획
2.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재정분담방안
3.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4.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경비부담 등)

-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